

< 소관 부서명 >

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462



는 서류에 한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~ ④ (생략)

제6조(상담회사의 지원) ①법 제31조

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----,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상담회사의 지원) ①법 제32조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,

② (현행과 같음)

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  
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 
있는 자

라. 상담회사의 등록이 취소될 당시  
당해 상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  
이었던 자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 
경과되지 아니한 자

마.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 중  
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 
인 자

4. ~ 5. (생략)

② 상담회사는 전문인력의 해직 등으  
로 제1항제2호의 등록요건에 미달  
되는 때에는 해직일로부터 30일내  
에 충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등록 및 변경등록) ①법 제31조  
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  
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 
지원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 
한다)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 
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  
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 
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  
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변경된  
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 
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15일--  
-----,

제4조(등록 및 변경등록) ① -----  
-----  
----- 「중소기업창업  
지원법 시행규칙」(이하-----  
-----  
-----,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15일 -  
-----  
-----  
-----

영위하는 사업에 사안별 업무협약의 형태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.

4. ~ 6. (생략)

제3조(등록요건등)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영 별표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·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 일 것

2-1. 영 별표 7호의 “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”라 함은 다음과 같다.

가. ~ 라. (생략)

3. 상담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(법인인 경우에 한함)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
가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나.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다.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,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등록요건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,

1. (현행과 같음)

2. 영 별표 1-----  
-----  
-----  
---

2-1. 영 별표 1-----  
-----  
-----  
-----,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3. <삭제>

**「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」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**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중소기업창업지원법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,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,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중소기업창업지원법</u>」(이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중소기업상담회사</u>”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,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, 자금조달·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상근전문인력</u>”이란 <u>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</u>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<u>별표</u>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.</p> <p>3. “<u>비상근전문인력</u>”이란 영 <u>별표</u>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담회사가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중소기업상담회사</u>”(이하 “<u>상담회사</u>”라 한다)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「<u>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</u>」(이하 ----- <u>별표 1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 <u>별표 1</u> -----</p>

## 다. 기타

-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별지 번호 오류 등을 정정

### 3. 의견제출

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창업진흥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- \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(전화 : 042-481-4462, Fax : 042-472-3972)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- 327호

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5일

중소기업청장

## 「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상담회사 등록취소 후 재등록을 위한 경과기간 삭제 등 상담회사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폐지하고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상담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 제한 규정 삭제(제3조)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명시된 중복된 항목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항목 삭제

나. 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(제3조, 제4조)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」의 상담회사 변경등록일에 따라 하위 지침인 운용규정을 개정